

#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의 안 번 호	497
--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'96. 5.

제 안 자 : 안산시장

## 1. 제정이유

- 대도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도 도시가스 사업자금 용자조례를 근거로 도 및 시비로 기금을 조성, 도시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설치자금을 도에서 일괄관리 운용해 왔으나,
- 경기도 조례 및 용자제도를 개정, 수요가 기금을 조성주체인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 하여 금융기관의 다양화 및 대출금액 상향조정 등으로 수요가 기금의 대출 활성화 및 도시가스 보급확대

## 2. 주요골자

- 도시가스사업 육성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(안 제3조)
- 용자대상은 안산시의 도시가스 수요가로 한다.(안 제4조)
-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사용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 시설의 설치기금으로서 산업체 제조사설은 제외한다.(안 제5조)
- 용자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위하여 도시가스 사업기금 용자 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.(안 제8조)
- 용자대출 한도액은 시예치금 범위내에서 시설설치비의 70% 이내로하며 시중 일반 대출 금리 보다 2% ~ 3% 낮게한다.(안 제9조)
- 수요자에게 용자된 기금은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.(안 제11조)

## 3. 참고사항

- 근거 법령 : ① 지방자치법 제133조 (재산 및 기금의 설치)  
 ② 지방재정법 제29조 (예산총계주의 원칙)  
 ③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 (기금의 운용·관리)
- 예산 상황 : 5억원 (경기도금고 예치중)
- 기타참고사항 : 경기도 예관 57244-9(96.1.30)호로 '도시가스 수요가 기금설치

## 안산시도시가스수요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

**제1조 (목적)**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한 안산시 도시가스 사업기금(이하 "기금"이라 한다)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 (기금의 조성)**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안산시 출연금
2.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이자수익금
3. 기타 보조금 및 용자상환금

**제3조 (기금의 관리)** ① 기금은 안산시장 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과 협약에 의하여 지정된 금융기관(이하 "금융기관"이라 한다)이 관리하되, 도시가스사업 육성을 위한 목적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.

② 시장은 기금을 금융기관에 정기예금 또는 대여금방식(이하 "예치금"이라 한다)으로 관리한다.

③ 금융기관은 예치금의 범위안에서 시장과의 협약에 의하여 용자대상자에게 기금을 용자한다.

④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.

**제4조 (용자대상)** 기금의 용자대상은 다음과 같다.

- ① 안산시의 도시가스 수요가
- ② 기타 도시가스의 보급확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
**제5조 (기금의 용도)** 기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.

1. 도시가스사업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 규정에 의한 도시가스 사용시설로서 사용자가 부담하는 신규시설의 설치기금. 다만, 산업체 계조시설은 제외한다.
2. 기타 공공의 이익 및 가스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

**제6조 (용자계획의 공고)** 시장은 매년 용자설시전에 용자기금의 총액, 용자 한도액, 용자의 대상, 우선순위 기준, 용자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한 용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제7조 (용자신청) 용자를 받고자하는자는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1. 용자 신청서
2. 시공계약서(시공견적서 첨부)

제8조 (용자대상자의 선정 및 절차) 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요가의 용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공고된 내용에 따라 용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용자우선순위를 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용자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을 위하여 시장은 도시가스 사업기금용자 심의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 의해 통보를 받은 금융기관은 시설검사의 공정 단계별로 소정의 절차 (한국가스 안전공사의 완성검사 또는 중간검사필증 제출)를 거쳐 확인된 기성고에 따라 기금을 대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9조 (용자조건) ① 대출한도액은 시 예치금의 범위내에서 금융기관과 시장의 협약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다.

② 대출지원범위는 시설설치비의 70 퍼센트 이내로 한다.

③ 기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 보다 2퍼센트 내지 3퍼센트 낮게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의 저리용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보전금은 제3조 제2항에 의한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.

⑤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대출금리와 이자차액 보전금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 기관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.

⑥ 용자절차, 이자불입 및 상환방법 등, 이 조례에 정한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10조 (추가용자) 금융기관은 년도중에 수시로 회수되는 기금의 범위 내에서 시장과 협약에 의하여 추가용자 할 수 있다.

- 제11조 (기금의 상환) ① 수요가에게 응자된 기금은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.
- ② 제1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기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외한 연체이자를加산한다.
- ③ 안산시장 또는 금융기관은 기금을 응자받는 수요가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상환 기간 전이라도 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1. 기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
  2. 응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
  3.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
  4. 기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

제12조 (변경사항의 통보) 응자를 받은자는 명칭, 대표자 및 소재지 등 기타 변경사항이 있을 때 시장과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13조 (사후관리) 시장과 금융기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자를 받은자에 대하여 기금의 관리상태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4조 (기금관리 공무원)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담당과장은 기금 운용관으로 하고 담당계장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.

제15조 (보고) 금융기관은 기금의 운영상황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6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 (응자의 개시) 이 조례에 의한 응자금의 대출은 시에서 기금을 예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금융기관이 행한다.
- ③ (시행기간)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도시가스 보급율이 70%에 달할 때까지 시행한다.